

임시 이사회 결과 제 규정 일부 통보

1. 일 시 : 2017년 2월 25일
2. 장 소 : 속리산알프스 수련원 통나무세미나실

주요내용

▣ 대회관리규정

제4조 명분 : 대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, 정규 및 전국대회는 전 부서를 운영하고, 양일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단. 지역 여건에 맞게 부서 및 일정을 조정 할 수 있으나, 시. 도 부서 와 시. 군. 구 관내부서는 1개부서만 허용한다.

제8조 대회 승인취소

1. 최초 사업 신청 기관이 제7조 각항에 미달 될 때는 승인을 불허 할 수 있다.
2. 승인된 대회도 사업 시행 시, 이를 평가 하여 제6조 각항에 미달될 때, 차기년도대회 승인을 불허 할 수 있다.
3. 평가는 경기, 심판, 사무처에서 하고 이를 평균하여 득점으로 인정하며, 80점미만은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불허 할 수 있다.

제13조 대회관리

2항 : 전국 (초청)대회의 우승상금(품)은 최강부는 일백만원(₩1,000,000), 그 외의 부서는 일금팔십만원(₩800,000) 을 상회 하지 못한다.

7항 :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전국(초청) 대회로 승인받지 않은 대회는 최강부 외에 1개부서 만 전국부서를 운영 할 수 있으며, 위반시 대회의 주최·주관 시. 도 는 징계를 감수 하여야 한다.

8항 : 대한민국족구협회 산하 17개 시.도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팀은 본 협회의 경기규정. 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타 족구 단체의 행사 (대회)에 참여시 제재를 감수 하여야 하며, 심판은 자격을 취소한다.

단. 13조 7항은 2018년부터 시행한다.

■ 부별관리규정

제2장 최강부

제4조 : 선정

1. 20강으로 선정하며, 전국(정규. 전국. 초청)대회는 1. 2위한 팀과 선수, 그 외의 초청 전국일반부에서 우승한 팀과 선수는 다음 대회부터 최강부로 선정한다.

제9조 : 운용계획

2. 성적 산출 기준에 의하여 상위팀은 최강부로 등록한다.
3. 성적 산출 기간의 주전 선수는 최강부 선수로 인정한다.
4. 2와 3항에 의해 최강부로 승격해야 할 팀이, 공지 후 1개월 내에 등록하지 않을시 팀이나 선수는 1년 동안 타부서에 출전 할 수 없다.

제11조 : 기타부서

6항 :대한민국족구협회 산하 17개 시. 도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팀은 본 협회의 경기규정. 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타 족구 단체의 행사(대회)에 참여시 제재를 감수 하 여야하며, 심판은 자격을 취소한다.

■ 시. 도 회원단체 관리 규정

제4조(권리와 의무)

- ① 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 1. 본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
 2. 본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
 3. 본회가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
 4.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·주관할 수 있는 권리
- ② 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.
 1. 본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
2. 사업계획서와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할 의무
3. 본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 회비(20만원)를 납부할 의무.

사무국에서는 위 사항을 각 시. 군. 구 에도 전달을 하여,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